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난민신청자의 기초생활 개선을 위한 난민법 일부 개정법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건의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7년 7월 30일

청 원 인

성 명 : 남미르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소 개 의 원 : 남미르 (인) 외 25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서

1.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분쟁지역이 늘어나면서 난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들이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여러 나라들이 동참했고 대한민국 또한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난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사회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중 대두되는 부분은 난민들의 복지 문제입니다. 현 난민법 제40조를 참고하면 난민 신청자는 최대 6개월 동안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령에 의거하여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설정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64만 9932원인 반면, 생계 지원비는 41만 84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난민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난민들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법무부가 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아 지급 결정을 하는데 약 2개월이 걸리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낮은 금액의 지원금조차도 6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난민 신청 후 6개월까지만 생계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법무부 심사가 길어지면 그만큼 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처리된 혹은 계류 중인 의안에도 이런 지원금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위 법안을 바탕으로 지원금 여부에 대한 심사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보상함으로써 난민신청자들이 6개월 동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5회 정기회의 외교통상위원회는 난민법 제40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자 한다.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생계비 지원 신청이 인정된 난민신청자에 한하여, 생계비 지원 여부 심사에 소모된 기간을 포함해 난민법 제40조 1항에 의거하여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의 생계비 지원을 보장한다.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문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생계비 지원 신청이 인정된 난민신청자에 한하여, 생계비 지원 여부 심사에 소모된 기간을 포함해 난민법 제40조 1항에 의거하여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의 생계비 지원을 보장한다.

3. 기대효과

개정안이 가결되면 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이 증액되어 난민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난민 신청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난민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인 성명 : 남미르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